

국가교육위원회 제65차 회의

심의일자	2026. 2. 12.	보 고 사 항
공개여부	공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4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

제 출 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출일자	2026. 2. 12.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4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

I.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목적) 모니터링단 3기의 임기('25.4.1.~'26.3.31.) 종료 예정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모니터링단 4기 구성 필요
- (근거)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2025년 주요 성과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모니터링 참여 기간을 확대하여 보다 현장 전문성 높은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 보고 방식, 임기 확대 등 관련 고시 일부개정('25.12.11.)

[3기 구성 및 역량 강화]

- 모니터링단 3기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등 체제 마련('25.4월)
 - ※ 경과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3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 보고(제43차 회의, '25.2.14.)
- 모니터링 단원이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별·학교급별 맞춤형 온라인 연수('25.6월) 실시
 - ※ 학교급별(유·초·중·고·직업·특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역량 함양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25.6~12월, 총 6회)
 - *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관련 수립변경, △건강한 생활, 즐거운 생활 관련 수립변경 등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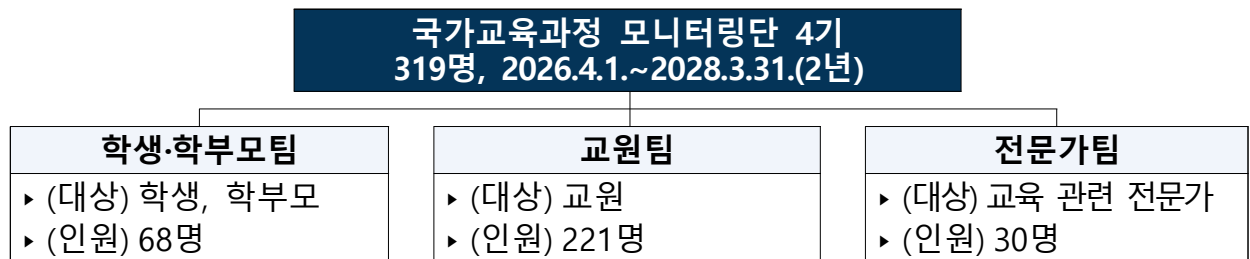
- 2025년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협의회* 개최('25.12월)
 - * 2025년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대상별·학교급별 소그룹 협의

II. 모니터링단 4기 구성·운영 방안(안)

< 2026년 추진 여건 및 방향 >

-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단계적 적용* 등에 따라 전문성에 기반한 심도 있는 현장 의견수렴 필요
 - * ('24) 초1~2 → ('25) 초3~4·중1·고1 → ('26) 초5~6·중2·고2 → ('27) 전학년
- ☞ 전문성·현장성에 기반한 내실있는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을 위해 규모(200→319명), 임기(1→2년) 등 개선 추진
 - ※ 1·2·3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고시 개정('25.12.11.) 및 의견수렴 확대 추진
- ☞ 대상별(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맞춤형 연수를 통해 단원의 직무 역량 강화

□ 구성



- (규모) 319명(학생 34명, 학부모 34명, 교원 221명, 전문가 30명)
- (임기) 2026.4.1.~2028.3.31.(2년, 1회 연임 가능)
- (자격 기준)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전문가*
 - * 교육행정가, 사회 각계 인사,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포함
- (구성 방법) 추천 기관(시도교육청, 관련부처·연구기관·대학 등)의 장은 학교급·교과 등을 안배하여 현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
 -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운영을 위해 단원의 희망 여부 등을 바탕으로 연임 대상자를 포함하여 추천

구분	학생·학부모	교원	전문가
추천 기관	시도교육청*		관련부처·연구기관·대학, 시도교육청
추천 인원	17명 내외 (시도교육청별 1배수)		최대 2명 (추천 기관별)
최종 구성 인원	289명		30명

* 지역·학교급·교과 등의 안배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세부 추천 규모 확정 예정

- (심사) 내·외부 위원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 대상자의 적격성·전문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
- (위촉) 국교위 위원장이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원으로 위촉
※ 단장은 단원 중에서 관련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 주요 활동 내용

- (수립·변경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 제시
※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관련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심의 전 의견수렴 및 결과 제출
- (조사·분석·점검 지원)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점검 업무를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시기(안)	방법
설계 단계	▶ 조사 설계안에 대한 의견 제시 (조사 항목·주기·대상·방법 등)	5~6월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 단계	▶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점검 의견 제시(결과의 적절성, 타당성 등)	12월	
환류 단계	▶ 조사·분석·점검 실시의 개선을 위한 의견 제시	상시	

- (교육 관련 의견수렴) 국교위가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간담회·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 제시

□ 활동 지원

- (직무 역량 강화) 국가교육과정 정책 추진 상황*, 단원의 특성(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를 통해 직무 전문성 제고
*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관련, 2026년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실시 등
- (상시 소통 활성화) 정기적인 모니터링단 활동 추진 및 교육과정 관련 자료* 제공 등 상시 소통 활성화
* 우리나라 및 세계 교육과정 자료, 국가교육과정 관련 주요 정책 자료 등

III. 향후 일정(안)

절차	주요 내용	시기	비고
모니터링단 4기 구성·운영 추진계획 보고	■ 국교위 전체회의 보고	'26. 2월	국교위
↓			
모니터링단원 추천 및 선정	■ 모니터링단 4기 추천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	3월	추천 기관 (시도교육청 등), 국교위
↓			
모니터링단원 위촉	■ 단원 위촉(발대식)	4월	국교위, 연구센터
↓			
모니터링단 활동	■ 교육과정 연수	6월	국교위, 연구센터
	■ 연수 및 협의회 - 2026년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점검 의견 제시	12월	
	■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수시	
↓			
결과 보고	■ 모니터링단 4기 운영 결과 보고 (5기 운영계획과 연계)	'27. 2월	국교위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 등) ⑥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제18조제1항제2호의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이하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은 시·도 교육청별, 학교급별, 교과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제2조제3호의 학부모

4.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사회 각계 인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④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이란 국가교육과정 운영의 질 관리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국가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교사·학생·학부모·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관계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분석·점검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2. “모니터링단”은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위촉·구성한 기구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모집 대상)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교육과정을 조사·분석·점검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단원의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원 :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고 연구활동 이력·교육과정 관련 업무 경력·교육과정 개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2.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학생자치조직의 대표이거나 대표 경험이 있는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
3. 학부모 : 「유아교육법」 제 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이거나 대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등을 우선으로 선발
4. 교육전문가 등 : 5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이 있고 연구활동 이력·교육과정 관련 업무 경력·교육과정 개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제5조(모집 절차)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단원은 제9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에 따라 모집 및 선발한다.

② 모니터링단 단장은 단원 중에서 관련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 단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결격 및 해촉 사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단원이 「국가교육위원회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해당 단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모니터링 범위) ① 모니터링 대상 학교급은 국가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

으로 한다.

- ② 모니터링은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교육과정 등 국가교육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제9조(모니터링 계획) 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연도의 모니터링단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
2.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의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사항
3. 영 제11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업무 지원의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사항
4.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단 교육에 관한 사항

제10조(결과 보고 등) ① 모니터링단은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모니터링단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모니터링단은 영 제11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업무 지원 활동 내역을 제9조에 따라 수립한 차년도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 연 1회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활동 내역을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1조(결과 활용)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할 때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으로 활용될 수 있다.

- ② 국가교육과정 운영 또는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은 제10조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교육과정의 제도 개선이나 지원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사적 이용 금지) 단원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고시에 규정한 것 외에 모니터링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